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 14단지 사회적기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 4차 공고

강동구에서는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을 무상 임대하여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고덕강일 14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모개요

가. 위치: 강동구 아리수로 고덕로 98길 160 (강동리버스트 14단지)

나. 주요시설: 입주사무실

다. 입주시기: 2025. 5. 1.(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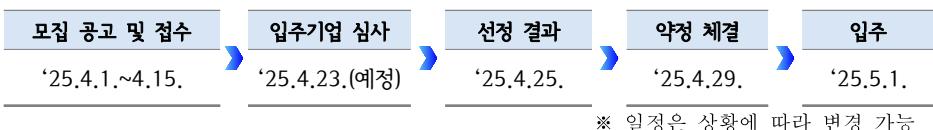
라. 모집공간: 1개소

마. 모집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경우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설립 5년 미만

바. 공고기간: 2025. 4. 1.(화) ~ 4. 15.(화)

사. 공고절차



2. 입주공간 현황

연번	단지	구분	공간 호수	공간면적(㎡)			소재지
				제	전용	공용	
1	14단지	1개소(1층)	101호(8인실)	122.64	122.64	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8길 160 (강동리엔파크 14단지)

3. 공간 사진



4. 입주기간

가. 2025. 5. 1. ~ 2025. 12. 31.(약 8개월)

나. 약정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최대 2회(2년)연장 가능

※ 마지막 1년 연장의 경우 강동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협약이 유지될 시 연장 가능

※ 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연장 심사일 기준 설립 5년 미만) 등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 재심사 신청 가능

※ 재심사 선정 기준 및 공고는 추후 공고

5. 임대 조건

가. 임대료 면제

나. 관리비 및 공과금 등 별도 납부(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료 포함)

다. 기타 협약사항 이행

6. 신청대상

- 아래 조건 중(1~5)에 모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최초협약 이후 지정기간 만료로 자격요건 상실 시, 약정체결 기간까지는 입주기간 유지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④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예비마을기업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⑥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모집 공고일 기준 설립 5년 미만)

2. 입주 후 2개월 이내 강동구 해당 소재지로 법인 및 사업장 주소변경이 가능한 기업

3.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

4. 강동구 사회적경제 사무공간 입주 이력이 없는 기업

5. 14단지의 경우 유급 근로자 3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대표자 포함 시 4명

7. 신청 불가 업종

- 아래 조건 중 각(1~3)호에 해당하는 기업

1. 영업 불가능한 업종

○ 기존 상가 및 시설 내 유치 불가능한 업종

2. 오염물배출 기관,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 발생,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 관련 업종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 기관

3. 기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8. 입주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5. 4. 1.(화) ~ 4. 15.(화)

나. 접수처: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동구 성안로 108)

(☎02-3425-9334, E-mail: kdkim@gd.go.kr)

다. 접수방법: 이메일 및 우편(방문)접수 (4.15.(화) 18:00 우편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제출 서류(필수)
1. 신청서 1부 [별지1]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2]
3. 대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별지3]
5. 상시근무자 명단 [별지4]
6.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2023년 자료불가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후 출력본)
8. 기업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9.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또는 마을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협동조합 신고증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서류(기타)
10. 취약계층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 취약계층 근로자로 인정) 1부
11.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기타 사업실적 증빙서류 1부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증빙 서류가 없는 항목은 접수 인정 불가

9. 대면심사 일정

가. 일시: 2025. 4. 23.(수) 16:00 (예정) ※ 상세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나. 장소: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강동구 성안로 108)

다. 심사내용: 신청기업별 기업 소개(약 5분) 및 질의응답

※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출 2025. 4. 21.(월)까지

10. 심사 선정 기준

- 가. 입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업종 및 공간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심사
- 나.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 득점 기업을 선정하며,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선정 가능**
- 다. 심사 결과 단지 별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약체결 하며, 예비 선정 일 경우 선순위 자 계약 포기 시 차순위 자와 협약 체결 가능

11. 입주 절차

- 가. 입주기업에 선정된 법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약 일정 및 협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을 통보 시 안내
- 나.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사무실 열쇠(번호키)안내

12. 퇴거 기준

- 가.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나. 협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협약을 한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입주자가 약정공간을 창고 등 사무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폐업 등 등 입주자격요건이 상실된 경우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 관리 운영 문제로 입주민의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단지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입주민의 삶의 질을 해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강동구청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기타 유의 사항

- *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도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현장 답사 및 단지 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공람, 추가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나. 신청 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신청기업별 배점 결과는 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 다. 입주 단지 내 상가건물에 입점한 업종과 경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라.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재심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마. 본 공고를 통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공간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내 위치하며, 단지 내에서 직접적인 판매 및 영업활동은 금지 됩니다.
 - 바. 인계받은 공간 입주자는 입주일자로부터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 협약이 해지되거나 연장 불가, 탈락 등의 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공간 인테리어 및 사용권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불허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하자는 입주 기업에서 보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입주자의 임의로 공간 등의 내부 또는 외부를 변경할 경우 퇴거 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차. 입주자는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 점유할 수 없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입주자 민원발생 시 관리사무소 및 강동구청의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하고, 과태료 부과금은 입주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타.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강동구 조례·지침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을 임의로 개축·증축 또는 신축할 수 없습니다.

카. 문의사항: 강동구 일자리정책과(☎02-3425-9334)

붙임 입주신청서 등 서식 각 1부.